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정관

1947.11.23 제정	1988.11.29 개정
1951. 3. 7 개정	1989. 8.29 개정
1952. 9. 1 개정	1989.12.19 개정
1955. 5. 7 개정	1990. 8.22 개정
1956.10.20 개정	1991. 1.16 개정
1957. 6.13 개정	1993.11. 1 개정
1959. 2.25 개정	1995. 1.14 개정
1960. 5.17 개정	1995.12.22 개정
1960. 9.10 개정	1998. 9.11 개정
1962. 5. 4 개정	1999. 7. 23 개정
1964. 1.18 개정	2000. 6. 23 개정
1966. 2.22 개정	2001. 6. 29 개정
1967.10. 6 개정	2002. 5. 27 개정
1968. 4.16 개정	2004. 2. 13 개정
1969.10.22 개정	2006. 1. 11 개정
1970. 5.27 개정	2009. 7. 16 개정
1972. 3.20 개정	2011. 1. 6 개정
1974. 2.16 개정	2012. 5. 1 개정
1975. 7. 2 개정	2013. 1. 9 개정
1977. 2.17 개정	2013. 6. 25 개정
1980. 1.15 개정	2015.12.18 개정
1980.12.16 개정	2016. 4. 4 개정
1981. 8. 4 개정	2019. 6. 3 개정
1983. 5. 4 개정	2021. 4. 16 개정
1986. 6. 7 개정	2023.10.10. 개정
1987. 9. 8 개정	2024.04.22. 개정
1988. 3. 5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회는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라 한다. 약칭은 ‘한국교총’이라 하며, 영문 명칭과 약칭은 다음과 같다.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K.F.T.A)

제 2 조(목적) 이회는 회원상호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권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暢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제 3 조(사무소) ① 이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에 둔다.
② 이회 인터넷홈페이지 영문도메인은 ‘<http://www.kfta.or.kr>’이며, 한글주소는 ‘한국교총’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 4 조(사업) ① 이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 자주적 협동·단결 활동에 관한 일
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부와외의 교섭·협의 등 관련 법률에 부여된 일<신설 2015.12.18>
3. 교권 확립에 관한 일<신설 2015.12.18>
4. 교원의 처우 및 복지증진과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일
5. 교권의 옹호·확대와 교권침해에 대한 구제 활동
6. 회원의 연수기회 확대 및 교직윤리 확립에 관한 일
7. 이회 종합교육연수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신설 2012.5. 1>
8.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에 관한 일
9.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에 관한 일
10. 교육정보화 촉진에 관한 일
11. 국제기구 및 각국 교원단체와의 교육·문화교류·협력에 관한 일
12. 청소년복지 및 문화증진에 관한 일
13. 평화증진과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및 사회정의 실현에 관한 일
14. 북한과의 교육·문화교류 및 민족통일 촉진에 관한 일
15. 「한국교육신문사」의 설치·운영 및 교육도서 연구·간행에 관한 일
16. 회관의 임대 및 회원에 대한 문화적·경제적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일
17. 다른 단체와의 연락 제휴에 관한 일
18. 회원의 상호부조에 관한 일<신설 2011. 1. 6>

제 3 장 회원 및 조직

제 5 조(회원) ① 이회의 회원은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으로 한다.

② 이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평생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가입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회 정관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1. 1. 6>

제 6 조(회원의 권리) ① 이회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이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이회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
5. 기타 권익을 옹호받을 권리

② 이회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제1항의 제3호 내지 제5호의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이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및 명예회원의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1.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이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이회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8 조(조직의 구성) ① 이회는 다음의 조직으로 구성하되, 지역조직을 조직의 근간으로 한다.

1. 지역조직
2. 직능조직
3. 직능단체<개정 2013. 1. 9>

② 지역조직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1)의 기준으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은 '시·도교총'이라 한다)를 조직하고,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2)의 기준으로 시·군·구교원총연합회(약칭은 '시·군·구교총'이라 한다)를 조직하고, 시·군·구교원총연합회는 각급학교 및 기타 교육관련기관의 분회로 조직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3. 10. 10>

③ 직능조직은 초등교사회·중등교사회·초등교장(감)회·중등교장(감)회·대학교수회로 구성한다.

④ 직능단체는 학교급별·직위별·남녀별·설립별 단체 및 전공별 단체와 준회원 단체 및 명예회원 단체로 구성한다.<개정 2013. 1. 9>

⑤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시·군·구교원총연합회는 당해 지역단위 직능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직능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시·군·구교원총연합회는 재정 등 설립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설립을 유보할 수 있다.

⑥ 시·군·구교원총연합회 및 분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9 조(조직기구) 이회의 조직기구는 다음과 같다.

- ① 의결기구 : 대의원회
- ② 집행기구 : 이사회
- ③ 위원회 : 위원회, 특별위원회
- ④ 사무국

제 4 장 대 의 원 회

제 10 조(대의원회의 구성) ① 대의원회는 각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직능단체가 그 소속 회원 중 3년이상의 이회 회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추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1. 9>

②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별 대의원수 배정은 해당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원수 600명당 1명으로 한다. 단, 시·도별로 배정된 대의원수가 4명 미만일 경우에는 4명으로 하고,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구역 수를 배정 대의원 수로 한다.

③ 직능단체에 대한 대의원 배정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되, 준회원 단체 및 명예회원 단체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 9>

제 11 조(대의원의 선출) ① 시·도별로 배정되는 대의원은 당해 시·군·구교원총연합회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구교원총연합회가 설립되지 않은 광역시의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행정구역별 분회장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시·도별 대의원 선출(직위별, 학교급별, 남녀별, 연령별)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직능단체에 배정되는 대의원은 해당 단체의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9>

1)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2. 시, 군, 구

제 12 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한국교육신문사에 관한 사항은 제8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한국교육신문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무총장의 임명 승인
3. 직능단체에 대한 대의원 배정 승인<개정 2013. 1. 9>
4.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전회원 투표에 관한 사항
8. 사업체 규약의 승인
9. 기타 중요사항

제 13 조(대의원회의 회의) ① 대의원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

1. 정기 대의원회는 이 회의 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 대의원회는 이사회나 대의원 5분의 1 이상이 그 목적을 명시하여 대의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③ 대의원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의 2(서면결의) ① 대의원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결의하여 요구하는 긴급 사안 또는 대의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처리하지 못한 의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결의하는 의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차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대의원의 의안 제출)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10명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개정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50명 이상이 개정이유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2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1. 9>

② 대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정책조정위원회) ① 대의원회에 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조정위원회는 직능조직 및 직능단체의 정책건의사항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이 회 정책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3. 1. 9>

1. 이 회의 기존 정책과 직능조직 및 직능단체간 정책 상충 사항
2. 타 구성원의 이익과 배치되는 사항

③ 정책조정위원회는 이 회 각 시·도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각 1명씩으로 구성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17 조(이사회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 회 회장, 부회장,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이 회 직능조직회장,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제 18 조(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한국교육신문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육신문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개정안의 작성,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예비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일시차입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 19 조(이사회회의 회의)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의 2(서면결의) ① 이사회는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결의하는 의안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9>

제 6 장 회장단회의

제 20 조(회장단회의)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단회의를 둔다.

제 21 조(회장단회의의 구성) 회장단회의는 의장이 되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22 조(회장단회의의 기능) 회장단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사회 결정사항의 세부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위임사항
3.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회 운영상의 중요사항

제 7 장 임 원

제 23 조(임원의 종류)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5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3. 이 사 65명 이내
4. 감 사 3명

제 24 조(회장)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統理)하고 대의원회,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이 회의 목표, 이념,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책에 대해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아 전회원 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③ 전항의 전회원 투표는 전회원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이 회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이 회 회원이 직접 선출한다.

⑤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25 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은 유.초등학교 2명, 중등학교 2명, 대학 1명으로 하되, 여회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유.초등학교, 중등학교 부회장 중 각 1명은 교사로 한다.

③ 부회장은 이 회 회장 후보자와 동반출마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④ 부회장은 하나의 시·도에서 2명 이상 선출될 수 없다.

제 26 조(선출이사) ① 선출이사는 이 회의 회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시·도별로 선출하되, 선출이사수의 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원수 2만 미만의 시·도 : 2명

2. 회원수 2만 이상의 시·도 : 3명

② 선출이사는 학교급별, 직위별, 남녀별을 고려하여 선출하되, 당해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포함하여 교사(수)가 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여교원을 1명 이상 선출하여야 한다.

③ 선출이사의 임기중에는 회원수 변동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이사수를 그대로 유지하며, 시·도별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의 개선으로 선출이사가 없는 학교급별이 생기거나 교사(수)가 반수 이상에 미달할 경우에도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제 27 조(고문) ① 이 회의 직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위촉한다.

② 이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내부 고문으로 위촉하고, 협력인사는 외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이 회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28 조(감사) ①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회장단회의, 위원회, 사무국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不備)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대의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회, 이사회 및 회장단회의, 위원회, 사무국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대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② 감사는 대의원회가 학교급별로 이 회의 회원 중에서 각 1명을 선출하되, 하나의 시·도에서 2명 이상 선출될 수 없다.
- ③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 29 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선출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규정한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이 회 각 직능조직회장인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부회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회장은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선출이사 및 감사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⑦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 제 29 조의 2(회장.부회장 및 선출이사.감사의 자격)** ① 회장.부회장 입후보 자격은 제6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교원(교육공무원법 제31조 및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고등교육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선거 공고일 현재 계속 5년 이상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당선일로부터 3년 이상의 정년(유.초.중.고는 만 62세, 대학은 만 65세)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단,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동안 교원노조의 노조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6. 4. 4>
- ② 선출이사.감사의 자격은 선출일 현재 계속 3년 이상의 이 회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선출이사는 선출일로부터 3년 이상의 정년(유.초.중.고는 만62세, 대학은 만 65세)이, 감사는 선출일로부터 2년 이상의 정년(유.초.중.고는 만 62세, 대학은 만 65세)이 남아 있어야 한다.<개정 2011. 1. 6, 2012. 5. 1>

제 8 장 위 원 회

- 제 30 조(위원회 설치)** ① 이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자문과 조직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 1. 6>
1. 정책자문위원회
 - 1) 발전기획위원회
 - 2) 교권옹호위원회
 - 3) 조직강화위원회
 - 4) 교육정책개발위원회
 - 5) 교육정책추진위원회
 - 6) 연수발전위원회
 - 7) 교원복지향상위원회
 - 8) 언론홍보위원회
 - 9) 대외협력위원회

- 10) 교과조직위원회
- 2. 조직자문위원회
 - 1) 유아교육위원회
 - 2) 초등교육위원회
 - 3) 중등교육위원회
 - 4) 대학교육위원회
 - 5) 교육전문직위원회
 - 6) 사립교육위원회
 - 7) 보건교육위원회
 - 8) 영양교육위원회
 - 9) 특수교육위원회

② 이 회 회장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1 조(위원회 기능) 각 위원회는 이사회, 회장단회의를 지원하여 이 회 목적과 특정 관심영역에서 수행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한다.

제 32 조(위원회 운영) ① 각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위원장을 두어 해당 위원회 업무를 관장토록 하되, 각 위원회별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 2011. 1. 6>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 회 회원 또는 사계 전문가 중에서 이 회 회장이 위촉한다.

③ 각 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사 무 국

제 33 조(사무국) ① 이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제는 이사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장은 필요시 사무국 직원을 지역조직 및 직능단체, 직능조직에 파견근무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9>

④ 사무국은 이 회 직능조직의 조직운영 및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 34 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결정사항 수행 및 그 결과의 보고
2. 예산의 집행 및 재산, 회계관리 운영
3. 사무국 총괄

제 10 장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 35 조(회원수, 회원명부 보고 및 회비납부) 각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회원수를 분기별(연 4 회)로, 회원명부는 3월과 9월(연 2회)에 이 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른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변동 회원수에 대한 회비는 연도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 36 조(의견발표 등의 조정)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회의 활동영역에 속하거나 유관한 문제에 관하여 대외적 의견발표 또는 건의를 할 경우에는, 이 회와 협의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한다.

제 37 조(검사) ① 이 회 회장은 회원수, 회원명부, 회비, 보조사업 및 기타 이 회와 관련있는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업무에 중대한 하자나 문제가 발생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관련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이 회 회장의 자료제출 요청 및 검사활동에 대해 해당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이 회 회장은 검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 대해서 조직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 38 조(정관준용)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정관은 이 정관에 준한다.

제 11 장 직능조직

제 39 조(조직 및 임원) ① 이 회 직능조직은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감)회, 중등교장(감)회, 대학교수회로 한다.
② 이 회 직능조직은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시·군·구교원총연합회 직능조직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이 회 각 직능조직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각 직능조직의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고 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장이 된다.
④ 이 회 각 직능조직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2명을 두며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되, 해당 시·도 직능조직 회장, 부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이 회 각 직능조직 회장은 각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당해 직능조직 회장 중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이 회 당해 직능조직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 40 조(직능조직의 권리) 직능조직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직능조직은 이 회에 정책을 건의할 수 있고 그 실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직능조직은 이 회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③ 직능조직은 조직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이 회로부터의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41 조(직능조직의 의무) ① 직능조직은 이 회의 설립목적, 사업, 정책 및 결정사항에 반하여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직능조직은 당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리 관련 제반사항을 이 회 사무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타 이 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2. 당해 직능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제 12 장 직능단체<개정 2013. 1. 9>

제 43 조(직능단체의 가입과 탈퇴) 직능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9>

제 44 조(직능단체의 권리) 직능단체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3. 1. 9>

1. 직능단체는 이 회에 정책을 건의할 수 있고 그 실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직능단체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3. 직능단체는 목적활동과 관련하여 이 회로부터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45 조(직능단체의 의무) ① 직능단체는 이 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9>

② 직능단체는 이 회의 설립목적, 사업, 정책 및 결정사항에 반하여 활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13. 1. 9>

③ 대의원을 배정받는 직능단체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9>

제 13 장 협력단체

제 46 조(협력단체) ① 이 회의 설립목적과 활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를 협력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협력단체는 이 회의 정책과 입장을 지지·후원하여야 하고 이 회의는 협력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협력단체의 지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 14 장 재 무

제 47 조(회계) ① 이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이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별한다.

③ 사업체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 48 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기부금과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49 조(회비) ① 회비책정 및 수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비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50 조(재산의 구분) ① 이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이란 이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보통재산이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③ 이 회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별지 목록의 토지, 건물 기타 부동산
2.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재산

제 51 조(재산의 관리) ① 제50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

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6. 25>

② 기본재산 이외의 보통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5 장 조직윤리특별위원회

제 52 조(조직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 회원 또는 정관 제8조 제1항 각 호의 조직(이하 '기간조직'이라 한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비위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및 징계를 하기 위하여 조직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조직윤리특별위원회는 이 회 회장단 및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직능조직회장 등 27인으로 구성하고, 이 회 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제 53 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1.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간조직 및 회원의 분쟁, 부정 및 비위행위, 이 회 정관 위배 및 명예훼손 행위 등에 관한 사항
3. 기간조직 및 회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기간조직에 대한 이 회 회장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 또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
5. 기타 조직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② 조직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기간조직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시정요구
2. 원상회복
3. 전회원 고지 및 투표
4. 고소·고발

③ 조직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경고
2. 견책
3. 자격정지
4. 제명
5. 고소·고발

제 54 조(조직윤리특별위원회 회의) ① 조직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직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5 조(결정사항의 준수) 기간조직 및 이 회 회원은 조직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16 장 해 산

- 제 56 조(해산) ①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6. 25>
- ② 이 회를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부한다.

제 17 장 보 칙

제 57 조(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25>

제 58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974. 2. 16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부회장의 임기는 그 회장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의 교육회에서 이 회의 대의원이 선출한다.
- ④ 이 정관에 의한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의 교육회의 대표자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 3 조(재산귀속) 이 정관 시행당시 이 회에 가입된 학교급별 교육회의 재산은 이 정관 효력 발생일로 부터 1월 이내에 각각 다음에 의하여 처리된다.
1. 중앙의 학교급별 교육회의 재산은 이 회에 귀속된다.
 2.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의 학교급별 교육회의 재산은 각각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의 교육회에 귀속한다.
 3. 시·군의 학교급별 재산은 각각 시·군 교육회에 귀속된다.

부 칙(1975. 7. 2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하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회계연도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1976회계연도는 1976년 3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1980. 1. 15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2. 16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의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부회장, 감사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규정(定數規定)과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별 고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정관 시행당시의 이사중 선출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④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되는 최초의 감사중 1인의 임기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연으로 한다.

⑤ 이 정관 시행당시의 사무총장은 이 정관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⑥ 제13조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중임기간 산정은 이 정관 시행 이전의 대의원 재임기간을 포함한다.

⑦ 시·도 교육회는 이 정관 시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 정관에 의한 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⑧ 1980년도 정기 대의원회는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개최할 수 있다.

⑨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이 아닌 시·도 교육회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소정의 법절차에 따라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부 칙(1981. 8. 4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5. 4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의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3조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③ 제13조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중임기간 산정은 이 정관 시행이전의 대의원 재임기간을 포함한다.

④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이사의 임기는 그 회장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이 정관 시행후 회장, 부회장, 시·도 교육회장, 사무총장을 제외한 최초로 선출되는 이사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출신인 이 회의 대의원이 선출한다.

⑥ 선출이사는 임기중 당연직 이사인 시·도 교육회장이 개선되어 선출이사와 동일한 학교급별이 되는 경우에도 선출이사는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부 칙(1986. 6. 7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이사의 임기는 회장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정관 시행후 증원되어 최초로 선출되는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출신인 이 회의 대의원이 선출하되 현 이사 및 감사의 출신 학교급별을 제외한 다른 급 별에서 1인씩 선출한다.

부 칙(1987. 9. 8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증원되어 선출되는 선출이사의 임기는 회장임기의 잔 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1988. 3. 5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선출 이사는 임기중 시·도 교육회장이 개선되어 선출이사와 동일한 학교급 별 이 되는 경우에도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부 칙(1988. 11. 29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선출이사는 임기중 시·도 교육회장이 개선되어 선출이사와 동일한 학교급 별이 되는 경우에도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②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여자회원을 대표하는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 정관에 의하여 증원되어 최초로 선출된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 고 이 정관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에 취임한다.

부 칙(1989. 8. 29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2. 19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8. 22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1989년 12월 19일 개정된 정관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원되어 최초로 선출된 선출이사의 임기는 회장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정관에 의하여 시·도별로 배정되는 대의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이 정관 시행으로 대의원수가 감원되는 시·도는 대의원 배정수에 도달할 때까지 결원(缺員)되는 대의원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다.
2. 이 정관 시행으로 대의원수가 증원되는 시·도는 대의원수가 감원되는 시·도의 배정 대의원수가 도달할 때까지 증원되는 대의원의 선출을 유보한다.
3.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직능 전문별연구단체 대의원은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부 칙(1991. 1. 16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1. 1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수가 감원되는 시·도는 그 수에 도달할 때까지 임기 만료자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다.

② 이 정관 개정전 종전의 규정에 의거 가입한 직능단체는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자격을 유지하며, 직능단체에 대한 대의원 배정과 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1년 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 1. 14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또는 분할이 발생하는 경우 이 정관에 의한 대의원 및 임원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를 달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1995. 12. 22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전년도 정기대의원회까지로 한다.

부 칙(1998. 9. 11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23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23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29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13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부회장의 임기는 신임 회장이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③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선출이사가 결원이 되었을 경우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부 칙(2006. 1. 11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회의 기간조직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38조 및 제15장의 조직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도록 해당 정관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이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와 관련하여, 개정전 구성된 조직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장한다.

부 칙(2009. 7. 16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06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회원의 상호부조 사업에 대한 정기감사 및 보고) 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한다)는 정관 제4조제1항15조의 회원 상호부조에 관한 사업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상호부조에 관한 사업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상호부조 특별회계의 독립계정을 마련하여 수지예산을 관리·운영한다.
② 한국교총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제7조(사업 실적 및 사업 계획 등의 보고)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특별회계 포함)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특별회계 포함)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특별회계 포함) 1부

부 칙(2012. 5. 1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재임 중인 선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장하되, 결원이 되었을 경우 제2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3. 1. 9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25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2013년 3월 23일에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12. 18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4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4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16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0. 10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4. 22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총괄표

구 분 재산명	수 량	단위	평가금액(원)	비고
대 지	28,337.1	m ²	3,262,639,248	
건 물	21,825.21	”	11,898,057,207	
답(畓)		”		
전(田)		”		
임 야		”		
잡 종 지		”		
동산(현금)		₩	<삭제>	
주 식				
국 채				
기 업 체				
기계 · 기구				
합 계	50,162.31		<u>15,160,696,455</u>	

1. 대 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출연(취득증자인가)금액		등기부상 소유자	비고
					출연(취득증자인가) 년 월 일	출연(취득증자인가) 당시평가액(원)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42	대	25,688.3	1985. 5. 29	3,209,103,261	사단법인 한국교원단 체총연합회	
		2	대	407.8	1985. 5. 29	51,743,187		
2	충남 논산군 채운면 화산리	303 -14	대	2,241	1968. 11. 13	1,792,800		
계				28,337.1		3,262,639,248		

2. 건 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출연(취득증자인가)금액		등기부상 소유자	비고
					출연(취득증자인가) 년 월 일	출연(취득증자인가) 당시평가액(원)		
1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철근콘 크리트 라멘조	21,442.23	1989. 12. 12	11,809,422,707	사단법인 한국교원단 체총연합회	
			일반 경량 철골조	334.08	1992. 11. 6	88,634,500		
			일반 경량 철골조	48.90	1992. 11. 6			
계				21,825.21		11,898,057,207		

사단 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관시행세칙

1960. 9.10. 제정	1993.10. 7. 개정
1962.11.13. 개정	1994. 4.27. 개정
1963.11.19. 개정	1994.11.25. 개정
1964.11.14. 개정	1995.11.29. 개정
1965.11. 4. 개정	1998. 4.24. 개정
1967.10. 6. 개정	1999. 4.17. 개정
1969. 2.15. 개정	1999.11.22. 개정
1972. 1.12. 개정	2000. 4.22. 개정
1972. 3.29. 개정	2001. 5. 3. 개정
1976. 1.21. 개정	2001. 11. 9. 개정
1976.11.25. 개정	2002. 4. 19. 개정
1978. 1. 1. 개정	2003. 12. 27. 개정
1980.12.16. 개정	2005. 11. 25. 개정
1981. 8. 4. 개정	2010. 11. 26. 개정
1982.11.20. 개정	2012. 3. 30. 개정
1985.11.28. 개정	2013. 1. 9. 개정
1986. 7. 8. 개정	2013.11.23. 개정
1988.11.16. 개정	2020.10.23. 개정
1989. 6.19. 개정	2022.12.23. 개정
1989.11.29. 개정	2024. 3. 29. 개정
1990. 5.21. 개정	2024. 9.27. 개정
1990.11.2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정관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2 조(회원의 자격) ① 이 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해당자로서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고 임용된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별표와 사립학교법 제52조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임용된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임용된 교원
4. 교육기관, 교육유관기관 및 단체,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장학직, 연구직 및 연구원 <개정 2010. 11. 26>
5. 법령에 의해 설립된 각종 특수대학(교)의 교원<신설 2010. 11. 26>

② 이 회의 준회원은 다음의 해당자로서 준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개정 2012. 3. 30>

1. 교육대학교 및 대학교의 사범대학에 재학중인 자
2. 대학(교)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 또는 교원임용요건을 갖춘

자

3.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으로서 준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
- ③ 이 회 평생회원은 정년·명예퇴직·의원면직한 교원으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개정 2010. 11. 26 / 2024. 3. 29>
- ④ 이 회 명예회원은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시·군·구교원총연합회장 및 학교분회장의 추천을 받은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으로 하되, 소정의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개정 2010. 11. 26 / 2024. 3. 29>
- ⑤ 이 회 준회원 및 평생회원과 명예회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0. 11. 26>

제 3 조(가입과 탈퇴) ① 이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또는 시·군·구교원총연합회가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회 회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또는 시·군·구교원총연합회가 정한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회원수, 회원명부 보고 및 회비납부) ①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분기별(연 4회) 마지막 월일까지 회원수를 시·군·구교원총연합회별, 직능조직별(남녀별구분 포함)로 구분하여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월과 9월 말일까지 이 회의 소정양식에 변동사항을 수정한 회원명부를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비는 매월 납부하되 당해 월분 회비는 다음달 5일까지로 한다.

④ 이 회 및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시·군·구교원총연합회의 회비는 금융기관을 통해 매월 분회로부터 수납하고, 수납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시·군·구교원총연합회의 회비는 5일 이내에 해당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시·군·구교원총연합회로 이체한다.

제 3 장 조 직

제 5 조(직능조직의 구성) 각 직능조직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구성한다.

1. 각 직능조직은 학교 설립별(국·공·사립)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2. 초등교사회는 이 회 초등교사 회원과 유치원교사 회원으로 구성한다.
3. 중등교사회는 이 회 중등교사 회원으로 구성한다.
4. 초등교장(감)회 및 중등교장(감)회는 당해 학교급별의 교장·교감 회원, 연구사·연구관 회원, 장학사·장학관 회원으로 구성하되, 유치원 원감·원장 회원은 초등교장(감)회에 포함한다.
5. 대학교수회는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교 교수 회원으로 구성하되, 총·학장을 포함한다.

제 5 조의 1(시·군·구교원총연합회 및 분회 설립) ① 시·군·구교원총연합회는 교육지원청 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분회는 학교 단위로 설치한다. 단, 대학의 경우에는 단과대학별로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11. 26>

제 6 조(직능조직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회 각 직능별 운영위원회는 당해 시·도직능조직의 회장 및 부회장 2명으로 구성한다.

제 7 조(직능단체의 구분) ① 이 회의 직능단체는 학교급별·직위별·남녀별·설립별 단체 및 전공별

단체와 준회원 단체 및 명예회원 단체로 구분한다.<개정 2013. 1. 9>

- ② 학교급별·직위별·남녀별·설립별 단체는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최소한 학교급별,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서 전문성 신장 및 이익에 관한 연구활동 및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③ 전공별단체는 학문 및 교과에 대한 연구활동과 자기연찬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④ 준회원 단체는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회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에 참여하고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⑤ 명예회원 및 평생회원 단체는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회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에 참여하고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⑥ 직능단체의 가입요건 및 절차,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 1. 9>

제 8 조(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조직상황 보고)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대의원회의 결의사항
- 2. 정관개정
- 3. 임원명단 및 변동사항
-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9 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후 20일 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를 각각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한국교총 정관정신 준수) 정관 제8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직(이하 '기간조직'이라 한다.)의 정관 또는 회칙 중에 이 회의 정관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조직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기간조직의 회장 또는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대 의 원 회

제 1 절 대 의 원

제 11 조(직능단체의 대의원 배정) ① 이 회의 직능단체로서 이 회 회원이 600명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의원 1명을 배정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이 배정되는 단체의 회원 중 이 회의 가입대상이 되는 회원은 모두 이 회 회원이어야 한다.<개정 2013. 1. 9>

② 제1항의 단체가 회원 20,000명을 초과 할 때는 매 20,000명당 대의원 1명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을 배정받은 직능단체가 그 배정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배정대의원의 자격은 즉시 상실된다. <개정 2013. 1. 9>

④ 대의원을 배정받은 직능단체가 징계중에 있거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달을 제외한 2개월 이상의 회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그 단체에 배정된 대의원의 자격은 정지된다.<개정 2013. 1. 9>

제 12 조(겸직 금지) ① 이 회의 대의원은 이 회 임원,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시·군·구교원총연

합회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이 회의 임원은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시·군·구교원총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이 회의 직능조직 회장의 이 회의 이사겸직은 예외로 한다.

제 13 조(시·도별 대의원 공석처리)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달을 제외한 2개월분 이상의 회비미납이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 배정 대의원수에서 회비미납에 상당하는 회원수 비율의 대의원수를 공석으로 처리한다.

제 14 조(대의원 추천기준) ①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다음에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대의원을 추천한다.

1. 교사(수)가 과반수가 되어야 함.
2. 하나의 학교급에서 과반수를 점하지 않아야 함.
3. 50세 미만 교사(수)가 반수 이상이 되어야 함.
4. 여회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되, 시·도 실정을 고려함.

②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대의원을 배정받은 직능단체의 장은 대의원 명단을 대의원회 개최 2개월 전까지 이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9>

제 15 조(시·도별 대의원 배정) 시·도별 대의원수 배정은 전년도 1년간의 회비 납부에 근거한 연평균 회원수 비례로 배정하며, 대의원수를 배정받은 각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14조 제1항의 각 호에 의거하여 대의원 선출단위조직(행정구역별 또는 시·군·구교원총연합회)에 재배정한다.

제 16 조(대의원 추천기준일)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의원을 배정받은 직능단체는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대의원 명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이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9>

제 17 조(대의원의 임기 및 자격) ①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되는 해의 4월 1일부터 임기만료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하되, 후임 대의원이 선출되는 날로 임기가 만료된다.

② 대의원이 선출단위조직에서 전출하였을 때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18 조(결원대의원 보선 및 임기) 대의원이 그 임기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당해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직능단체는 즉시 후임자를 선출, 이 회로 추천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1. 9>

제 19 조(대의원의 활동) ① 대의원은 모든 회원의 대표자로서 선출단위조직 및 전회원의 의사를 성실히 수렴하여 대의원회에 반영시켜야 하며, 대의원회 종료후 1개월 내에 그 상황을 선출단위조직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소속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시·군·구교원총연합회 또는 직능단체가 대의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배할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이 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9>

제 2 절 정책조정위원회

제 20 조(정책조정위원회) ① 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회 회장이 학교급별, 직위별, 남녀별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각 1명을 배정하고 시·도별 이 회 대의원이 그 중에서 선출한다.

② 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대의원은 그 선출된 날로부터 당해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

③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자격상실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즉시 후임자를 선출하여 이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책조정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정책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직능단체 및 직능조직의 대표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3. 1. 9>

제 3 절 회 의

제 21 조(대의원회 개최) 대의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개최일 7일 이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대의원회 출석) 대의원회에 출석할 대의원은 회의 개최전에 사무국에 등록하고 대의원 표식을 교부받아 회의에 출석하는 동안 패용하여야 한다.

제 23 조(대의원회 출석위임) 대의원회에는 대리출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석 대의원의 위임장은 출석원수로 치나 표결권은 없다.

제 24 조(대의원회 의안작성) 대의원회의 의안은 이사회가 작성한다.

제 25 조(대의원회 성립) 대의원회는 8개 시·도 이상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 26 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대의원회의 기능을 촉진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규칙, 선거, 예결, 정책·결의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은 각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당해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이 회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각 분과별 위원 1명씩을 선출하되 학교급별, 직위별, 남녀별, 연령별을 고려하여 교사(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거분과위원 명단은 대의원회 개최 2월전까지, 기타분과위원 명단은 1월전까지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 궐위(闕位)에 따른 회장선거 및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가 결의·처리한 후,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운영·규칙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회 운영방향 및 활동방침에 관한 사항
2. 다른 단체와의 제휴·협력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과 의사운영규칙의 개정 및 그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4. 각 시·도의 회비납부 상황과 그에 따른 대의원 공석처리 여부, 대의원 배정 직능단체의 회비납부 상황 및 대의원 배정 여부, 대의원의 구성비율(학교급별, 직위별, 남녀별, 연령별)에

관한 사항<개정 2013. 1. 9>

5. 대의원회 의사일정 및 기타 대의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② 선거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또는 사무총장 승인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회 선거에 관한 사항

2. 전회원투표 방법 및 기타 투표관리에 관한 사항

③ 예결분과위원회는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정책·결의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자주적 협동·단결활동에 관한 사항

2. 회세확장 및 조직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교육 및 교원정책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관한 사항

6. 정치 및 사회 민주화에 관한 사항

7. 교원의 정치적·사회적 권리 신장에 관한 사항

8. 사회정의 실현 및 민족통일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원의 결의가 필요하거나 대의원회의 결의문 작성에 관한 사항

제 28 조(분과위원회의 임기 등) ① 분과위원의 임기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전까지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5 장 임 원

제 29 조(회장·부회장 선출) ① 이 회 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체 대의원수의 1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1개 시·도에서 4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 12. 23 / 2024. 9. 27>

② 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수락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발행한 회원확인서, 이력서, 추천 대의원 명단, 서약서, 범죄 경력 및 징계 이력에 대한 증빙과 소명서, 기타 선거분과위원회가 정하는 후보자 공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분과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중 범죄 경력은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았거나(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수사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에 있을 경우, 징계 이력은 재직중 견책 이상의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중에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 2024. 9. 27>

③ 회장은 선거인의 투표에 의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이 회 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 시행세칙 제39조 제1항의 선거분과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선거 당시 이 회 회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개표 완료일까지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3 11. 23 / 2024. 3. 29>

1. 이 회 임원, 대의원, 사무총장

2.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및 (수석)부회장, 시·군·구교원총연합회장 <개정 2022. 12. 23>

3. 이 회 및 이 회 지역조직의 직능조직의 장

4. 이 회 직능단체의 장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개정 2013. 1. 9>

제 30 조(이사 선출) ① 선출이사는 각 시·도별 이 회 대의원이 선출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선출이사수의 배정은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1년간의 회비납부에 근거한 연평균 회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해당 시·도의 이 회 대의원이 선출한 선출이사의 명단을 해당 시·도의 이 회 대의원 과반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선거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감사 선출) 감사의 시·도별, 학교급별, 직위별 배정은 선거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배정된 시·도의 이 회 대의원이 그 해당 회원중에서 선출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2 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회장이 선출된 직후부터 시작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선거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선출이사,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당해 대의원회 종료후부터 시작되며, 임기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직후 개최되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감사가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의원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한하여 결원감사 소속 시·도의 이 회 대의원이 보선하여 선출당시 최초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33 조(임원의 자격 상실)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 부회장은 신임 회장이 선출됨과 동시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부회장이 임기중 선출될 당시의 학교급별, 직위별 변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이사, 감사가 소속 시·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되었거나, 학교급별, 직위별 변동으로 정관 제26조, 제28조의 규정에 반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6 장 사 무 국

제 34 조(사무총장 승인 및 임명) ① 사무총장의 승인 방법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사무총장이 결원이 된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에 추천에 의하여 사무총장 서리(署理)를 임명하고 다음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국의 상위직 직원 중에서 사무총장대리를 임명하여 사무총장이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7 장 회장선거관리

제 35 조(선거관리) ① 선거일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② 선거방법 및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가 처리한다.

제 36 조(선거분과위원회 구성) ①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는 제28조에 의거 시·도별로 1명씩 구성한다.<개정 2020. 10. 23>

② 선거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시·도별로 선거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선거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선거분과위원회 사무소는 한국교총 사무국내에 둔다.

④ 선거분과위원장은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임사항을 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11. 26>

제 37 조(선거공고) 선거공고는 선거일 60일전까지 선거·교총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육신문·한교닷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제 38 조(선거운동 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3 / 2022. 12. 23>

② 제1항의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39 조(후보자의 추천 및 확정) ① 후보자는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 구비서류를 선거분과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분과위원회는 선거일 30일전까지 서류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확정하고 선거·교총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육신문·한교닷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② 대의원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선거분과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 27>

제 40 조(기탁금) 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시 선거분과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기탁금의 금액, 반환 및 귀속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분과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 41 조(선거인 확정) 선거분과위원회는 시·군·구교원총연합회 및 광역시 단위로 작성한 선거인(회원)명부를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의 확인을 거쳐 전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 30일전까지 선거인수를 확정하여 선거·교총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육신문·한교닷컴 등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3 / 2022. 12. 23 / 2024. 9. 27>

제 42 조(후보자 공보) ① 선거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성명, 사진, 기호, 연령, 경력, 공약사항 및 자기소개문, 추천 이유서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교총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육신문·한교닷컴 등에 공보한다. <개정 2024. 9. 27>

② 후보자는 후보자 공보에 필요한 서류를 선거분과위원회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후보자의 공보는 하지 아니한다.

③ 후보자는 허위사실이나 타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원고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선거분과위원회는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④ 선거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범죄 경력 및 징계 이력에 대해서 선거 홈페이지 등에 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7>

⑤ 선거분과위원회는 선거 직전 확정된 후보자의 연설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3>

제 43 조(선거운동의 금지) 이 회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 누구를 막론하고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2. 12. 23>

1. 선거운동 기간 외의 각종 선거와 관련한 행위 <개정 2024. 9. 27>

2.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3. 선거와 관련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 선거분과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회원 또는 선거사무를 대행하는 사무국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강

요 등을 하는 행위 <신설 2024. 9. 27>

6. 기타 선거분과위원회가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거나 판단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 44 조(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처리) ① 선거분과위원은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제43조에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하는지를 감시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시에는 즉시 선거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분과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 또는 학력 및 경력, 범죄 경력이나 징계 이력을 허위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 2024. 9. 27>

1. 서면경고<신설 2022. 12. 23>
2. 공개경고
3. 선거운동 제한 <신설 2013 11. 23>
4. 등록무효
5. 당선무효

③ 선거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지지자가 선거운동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고, 조직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지지자가 공개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지지후보를 명시하여 공고한다.<신설 2022. 12. 23>

1. 서면경고
2. 공개경고
3. 투표권 제한

④ 선거분과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당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3>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제2항 제4호 및 제5호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제2항 제3호의 제한 범위와 세부사항은 선거분과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3 / 2024. 3. 29>

제 45 조(선거비용의 부담)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은 이 회가 부담한다. 단, 후보자 개인별 홍보유인물 인쇄비용은 당해 후보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 12. 23>

제 8 장 준 칙

제 46 조(시·군·구교원총연합회) 시·군·구교원총연합회는 시·군·구교원총연합회의 임원,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이 회의 대의원을 시·군·구교원총연합회의 대의원회나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 47 조(분회) ① 각급학교 및 기타 교육관련기관의 분회는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집행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분회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회는 회무를 총괄하는 분회장을 분회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제 48 조(이행) 시·군·구교원총연합회, 분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규정한 사항을 회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세칙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 당시의 회장 상설자문위원회는 2001년 12월말까지 활동한다.
② 제27조에 규정한 대의원회 분과위원회는 이 세칙이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각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해당 분과위원을 이 세칙 개정 후 1개월 이내에 이 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부 칙(2003. 12. 27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세칙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제4조 제4항은 2004년에 3개 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05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② 이 세칙 시행당시의 재임중인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장하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추천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부 칙(2005. 11. 25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세칙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26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세칙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30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세칙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9일에 개정된 이 회의 정관시행일부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23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세칙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23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세칙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3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세칙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 29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세칙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9. 27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세칙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